

지급명령신청서

채 권 자 김하늘

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00, 000동 000호

채 무 자 박도윤

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00, 000동 000호

청 구 취 지

-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다음 각 기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가. 금 15,000,000원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
 -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.
- 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.

독촉절차비용

금 74,080원(내역: 송달료 67,680원, 인지대 6,400원)

청 구 원 인

1.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및 대여금 교부

채권자는 2025. 10. 15. 채무자의 사업운영자금 요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금 20,000,000원을 대여하고, 채무자는 이를 2026. 1. 31.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. 채권자는 같은 날 채무자 명의 계좌로 위 대여금 전액을 송금하여 약정에 따른 금전 교부를 마쳤습니다.

2. 일부 변제와 미변제 잔액

채무자는 변제기가 지난 2026. 2. 10. 채권자에게 금 5,000,000원만 변제하였고, 그 결과 현재 미변제 대여금 원금은 금 15,000,000원입니다.

3. 변제 촉구와 채무불이행

채권자는 2026. 3. 5. 문자메시지로 위 잔액의 지급을 다시 촉구하였으나, 채무자는 채무를 인정하면서도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.

4. 결론

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미변제 대여금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 절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

첨 부 서 류

1.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1통
2. 대여금 계좌이체확인증 1통
3. 일부변제 거래내역 1통
4. 변제촉구 문자메시지 1통

2026. 8. 7.

채권자 김하늘 (서명 또는 날인)

연락처

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